

0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변경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학·경력자 인정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이 2006. 6. 22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력신고 및 경력등급변경 등 경력관리에 관한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 시행일(2007. 6. 25) 이전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1.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급, 고급 등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계속 인정함**
2. 2007. 6.25 이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자 중
 -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 기능장 및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하며,
 -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인정함
3. **학·경력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초급만 인정**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감리원은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감리원은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유의사항

1. 기능장·기사·산업기사 및 학·경력자 중 특급, 고급 등 승급 대상자는 2007. 6. 22까지 신고 하여 야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급에 반영되며,
2. 2007. 6. 25부터는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
3. 시행일 이전 경력신고만 하고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받지 아니한 자는 2007. 6. 22까지 해당 수첩발급을 신청해야만 개정 전 규정에 의한 해당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4.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07. 6. 24 소인까지 유효**

■ 개정법령 및 시행일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06. 22
2.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및 부칙 제4조
3.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은 2006.06.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및 별

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2007년 6월 25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 (부칙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홈페이지(www.kee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신·구문비교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 (제3조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5년 이상 ○기사 8년 이상 ○산업기사 11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15년 이상	-
고급 기술자	○기능장 2년 이상 ○기사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학 12년 이상 ○고등학교 15년 이상	-
중급 기술자	○기능장 ○기사 2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기능사 8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석사 6년 이상 ○전문대학 9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학사 10년 이상 ○전문대학 13년 이상 ○16년 이상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2년 이상	○석사 또는 학사 ○전문대학 2년 이상 ○고등학교 4년 이상 (신설)	○학사 이상 4년 이상 ○전문대학 6년 이상 ○8년 이상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제21조 제1항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기능장 5년 이상 ○기사 8년 이상 ○산업기사 11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15년 이상	-
고급 감리원	○기능장 2년 이상 ○기사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학 12년 이상 ○고등학교 15년 이상	-
중급 감리원	○기능장 ○기사 2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기능사 10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석사 6년 이상 ○전문대학 9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학사 10년 이상 ○전문대학 13년 이상 ○16년 이상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6년 이상	(신설) ○학사 1년 이상 ○전문대학 3년 이상 ○고등학교 6년 이상 (신설)	○학사 이상 5년 이상 ○전문대학 7년 이상 ○10년 이상

개정			
[별표 1] 전력기술인의 범위 (제3조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삭 제>
특급 기술자	○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고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삭 제>	-
중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석사 이상 ○학사 1년 이상 ○전문대학 3년 이상 ○고등학교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삭 제>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제21조 제1항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삭 제>
특급 감리원	○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고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삭 제>	-
중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석사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업무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삭 제>

02

전력기술인 연회비 납부 안내

■ 회비부과 근거 : 협회 정관 제9조제2항제3호

■ 회비납부 방법

- 직접납부 : 협회 중앙회 및 해당지회를 방문하여 납부(현금 또는 BC카드)
- 통장납부 : 협회 해당지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금(회원성명 및 회원번호 기재 필수)
- 지로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별첨된 지로통지서를 이용해 입금하거나 지로장표(A장표)에 납부금액 및 회원성명과 회원번호를 기재하신 후 입금

■ 회비부과 기준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가입비	연회비	
직 무 회 원	설 계	설계업자, 설계사, 기술사	100,000	90,000
		설계보조자	60,000	60,000
	감 리	감리업자, 특급 및 고급 감리원	100,000	90,000
		중급 및 초급 감리원	60,000	60,000
	공 사	기술사, 공사기사	100,000	90,000
		기능장, 기능사, 기타 기술자	60,000	60,000
	선 임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90,000
		전기안전관리원, 기타 기술자	60,000	60,000
	대 행	전기안전관리사	100,000	90,000
		전기안전관리원	60,000	60,000
종신	설계·감리·공사·선임·대행업체의 소속 직무회원	-	30,000	
일반 회 원	개 인	직무회원 이외의 기술자격 취득자	60,000	60,000
	단 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무회원		
준회원	직무회원 이외의 기능자격 취득자 및 학·경력자	50,000	50,000	

- 기존 회원은 연회비 납부(관리정지 회원은 당해연도 및 전년도 미납회비 납부)

- 신규가입자에 부과하는 연회비는 가입시기(분기별)에 따라 매분기 최초월을 기준한 잔여분기에 대하여 부과함

■ 회원에 대한 혜택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 경력관리 및 각종 기술정보 제공
-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10% 할인 및 기술상담
- 전기재해 발생시 무료 사고조사 및 진단
-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개발시 협회지 무료홍보
- 협회지 광고게재시 광고료 할인 및 협회지 무료 제공
- 협회발행 단행도서 구입시 20% 할인
- 협회 주최 각종 세미나, 강습회 등 참여시 할인 및 우대
- 국내외 산업시찰 우선참여 기회제공 및 우대
- 우수회원 정부포상 추천
-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 공제사업의 이용(출자자에 한함)
- 협회운영 참여(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협회는 회비수납 방법을 개선하고자 그 동안 사용하였던 지로양식의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로발송이 예년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전력산업 및 전력기술인이 발전을 위하여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결과 불합격 내용 분석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에 의한 사용전검사 와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에서는 2006년도에 실시한 법정검사 불합격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유사한 불합격사례를 예방하고자 한다.

1. 서론

국내 전기안전관리 제도 중, 전기사업과 공급,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설계 및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다.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자가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사용전 및 정기검사중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유형의 불합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설비공사업체 및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성실시공·적정시공을 유도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사용전검사 분석

2.1.1 실적대비 불합격 현황

연도별 사용전검사 현황은 [표1-1]와 같으며 2006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는 40,422건, 불합격건수는 2,286건으로서 불합격률은 5.7%이며, 또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검사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 대상 호수는 3,594호로서 시정률이 8.9%이다.

[표1-1] 연도별 검사건수 대비 불합격률

연도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현장시정 내역	
				시정호수	시정률
2002	29,517	2,390	8.1%	6,651	22.5%
2003	37,235	3,411	9.2%	7,642	20.5%
2004	38,822	3,193	8.2%	7,313	18.8%
2005	38,846	2,724	7.0%	4,896	12.6%
2006	40,422	2,286	5.7%	3,594	8.9%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며, '04년도를 기점으로 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공사계획신고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매년 불합격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계도는 물론, 현장시정 활동 강화, 고객소리(VOC)듣기 간담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등으로 불합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중전기기 제조 기술향상으로 기기의 품질 및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인 검사실시에 따라 시공사의 전기설비 시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2.1.2 용량 및 전압별 현황

가. 2006년도 용량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중 용량 1,000kW미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87.1%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량 300kW이상~500kW미만 범위에서 불합격률이 6.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용량 1,000kW이상에서는 불합격률이 5.1%로 낮아졌다.

나. 전압별로는 고압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5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률은 5.8%로서 저압 수용가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저압 자가용전기설비 보다 전기 설비의 복잡도가 더 높은 관계로 불합격이 다소 높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용량, 전압별 불합격 건수

구 분	용량[kW]					전압별		
	300미만	500미만	1,000미만	1,000이상	계	저압	고압	계
검사 건수	21,718	6,726	6,756	5,222	40,422	16,719	23,703	40,422
불합격건수	1,199	433	386	268	2,286	900	1,386	2,286
불합격률	5.5%	6.4%	5.7	5.1%	5.7%	5.4%	5.8%	5.7%

2.1.3 설비별 검사현황

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수전설비(수용설비, 구내배전설비, 기기 포함)와 발전설비로 구분 되며, 발전설비는 고압이상 자가용수전설비를 갖춘 수용가에 설치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대부분이다.

나. 2006년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건수중 수전설비가 90.8%, 발전설비가 9.2%의 분포를 보였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 중 신규수용가에 대한 사용전검사 건수는 전체의 49.4%인 19,963건으로 불합격건수는 1,516건(불합격률 7.6%)이고, 용량증설 수용가 및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기기변경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는 45.4%인 18,363건으로 불합격건수는 766건(불합격률 4.2%)이다.

다. 용량증설 및 기기 변경수용가가 신규수용가에 비하여 불합격률이 낮게 나타난 요인은 단순설비 시공으로 분석 되었으며, 총 검사건수 중 5.2%인 2,096 건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 하여 불합격 건수는 4건(0.2%)으로 나타났다.

[표1-3] 2006년도 설비별 검사실시 현황

설비구분		검사건수	불합격건수	불합격률	검사점유율
수전설비	신규수용가	16,705	1,189	7.1%	90.8%
	증설·변경	18,257	754	4.1%	
	재 검 사	1,757	3	0.2%	
	소 계	36,719	1,946	5.3%	
발전설비	신규수용가	3,258	327	10%	9.2%
	증설·변경	106	12	11.3%	
	재 검 사	339	1	0.3%	
	소 계	3,703	340	9.2%	
계	신규수용가	19,963	1,516	7.6%	100%
	증설·변경	18,363	766	4.2%	
	재 검 사	2,096	4	0.2%	
	소 계	40,422	2,286	5.7%	

2.1.4 검사신청 유형별 사용전검사 실시 현황

[표1-4] 검사신청 유형별 분류

구 분	수전설비	수용설비	구내배전	설비기기	발전설비	계
실적건수	29,216	2,851	2,488	2,164	3,703	40,422
불합격건수	1,602	147	157	40	340	2,286
불합격률	5.5%	5.2%	6.3%	1.8%	9.2%	5.7%

검사유형별 현황은 수전설비가 29,216건(72.3%) 실시하여 불합격 건수가 전체의 70.1%(1,602건)이며, 그 외 수용설비 6.4%, 구내배전 6.9%, 발전설비가 14.9% 등으로 나타났다.

2.1.5 설비 및 유형별 부적합 현황

가. 설비별 부적합 현황

- 2006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수용가의 설비별 부적합 현황은 [표1-7]과 같으며, 저압 수용가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에서 부적합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입선 및 간선의 부적합률이 34.5%를 점유한다.
-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 접지시설(전기기기 접지 포함)의 점유율이 18.6%, 인입선 및 전선로가 17.0%이며, 기기에 대한 부적합으로는 변압기 11.1%, 발전기 8.5%, 피뢰기 7.7%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표1-5] 설비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저압 수용가	인입선 및 간선	416	34.5	고압 이상 수용가	피뢰기(LA, SA 등)	191	7.7
	차단기 및 개폐기	478	39.6		변압기(접지불량 204건)	274	11.1
	저압 배전반	274	22.7		콘덴서, 애자류, 기기류	101	4.1
	콘덴서, 계측함	39	3.2		발전기(동작상태, 시공)	210	8.5
	계	1,207	100%		충전부이격거리	24	1.0
고압 이상 수용가	인입선 및 전선로	420	17.0		접지시설	460	18.6
	개폐기(ASS, LBS, INT 등)	101	4.1		보호울타리시설	160	6.5
	차단기 및 계전기	73	3.0		고압설비 등 기타	293	11.9
	변성기(MOF, CT, PT, ZCT 등)	100	4.1		계	2,468	100%
	퓨즈류(COS, PF 등)	61	2.5				

나. 유형별 부적합 현황

- 2006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 불합격 수용가의 유형별 부적합 현황은 [표1-8]과 같으며, 저압수용가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차단용량 부족 34.1%와 접지불량이 17.6%, 시공불량(방호장치, 덕트·트레이, 차단장치미시공 등)이 17.5%를 차지했으며, 기타 신고도면과 상이 5.2% 등으로 나타났다.
-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에는 접지시설(미접지 및 접지저항 미달) 부적합 35.9%와 시공 부적합 사항(곡률반경, 맨홀설치 부적정, 케이블헤드처리 부적정, 포설방법 부적정 등)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비 미시공 14.7%, 신고내용과 상이 5.1% 순으로 나타났다.

[표1-6] 유형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저압 수용가	접지불량	213	17.6	고압 이상 수용가	접지불량	885	35.9
	시공불량	211	17.5		시공불량	571	23.1
	절연저항	30	2.5		절연저항	17	0.7
	기기불량	21	3.1		기기불량	51	2.1
	미시공	205	17.0		미시공	364	14.7
	신고내용상이	63	5.2		신고내용상이	126	5.1
	용량선정불량	411	34.1		용량선정불량	76	3.1
	기타	53	9.9		기타	378	15.3
계	1,207	100%	계	2,468	100%		

다. 세부항목별 부적합 현황

2006년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결과에 따른 세부항목별로 보면 저압수용가에서는 전선 및 기기의 용량부족, 시공부적합, 접지설비 부적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압수용가에서는 전기설비 미시공 및 시공상태 부적합, 동작상태불량, 접지부적합, 충전부이격거리 미달,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 설치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04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추가 안내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 법령해석 추진 배경

- 민원인이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과 관련, 비상주 전기감리원으로 배치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발주된 현장에도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부에 질의
- 우리부는 전기 비상주감리원과 소방 비상주감리원의 혼합배치 불수용 회신
- 민원인은 우리부 회신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을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

■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2007. 2. 26)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기감리원으로 일정한 현장의 범위내에서 중복배치할 수 있음

■ 비상주감리원 관련 법령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2006.10.2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 배치기준) 제8항
 - 비상주감리원은 9개이하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겸할 수 없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2006.7.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별표 2] 및 [별표 3] 1호 제마목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마. 업무 중첩도	(2) 비상주 감리원	[10]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예시>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부표 2-1] 및 [부표 3-1] 제5호 :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혼합배치 관련 세부평가방법 안내

- 법제처 유권해석 적용시기
 -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일(2007. 2. 26)을 기준으로 감리용역의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아니함
- 혼합배치시 일정한 현장의 범위(개소)
 - “일정한 현장”의 개소는 전기의 비상주감리와 소방 등 타분야 비상주감리 현장 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중복배치관련 PQ 평가방법
 -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비상주감리원의 혼합배치여부 사실조회 방법
 - 발주자 또는 시·도지사가 감리원의 중복배치를 확인(사실조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발주자 또는 시·도지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름
 - ※ 감리원의 중복배치여부 조회 가능단체
 - 전기 감리원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소방 감리원 : 한국소방안전협회
 - 건설·건축 감리원 :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정보통신 감리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PQ입찰 서류중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시 탈락 등의 제재(모집공고문 안내)
-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타법에 의한 비상주감리원의 중복배치 인정범위(합산하여 9개소까지 가능) 등을 입찰공고시 반드시 이를 기재

2007년도 공제사업 적용지분액을 알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공제사업 2007년도 적용지분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좌당 적용지분액 : 142,000원

2. 적용기간 : 2007. 4. 1 ~ 2008. 3. 31까지

3. 지분액 변동에 따른 신규출자 좌수 및 금액

- 종합감리업 : 141좌 이상(20,022,000원)
- 전문감리업 : 71좌 이상(10,082,000원)
- 종합설계업 : 141좌 이상(20,022,000원)
- 전문설계업1종 : 43좌 이상(6,106,000원)
- 전문설계업2종 : 15좌 이상(2,130,000원)

4. 설계업과 감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업종 중 상위 자본금 기준에 맞추어 1회만 출자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가. 협회양식(공통)

- 자본금(예치·출자) 신청서1부
- 자본금(예치·출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나. 첨부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자본금(예치·출자)신청서에는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은 개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04

전기기술지원 및 진단·점검 신청 안내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산업자원부의 특별법인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하여 전력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전력시설물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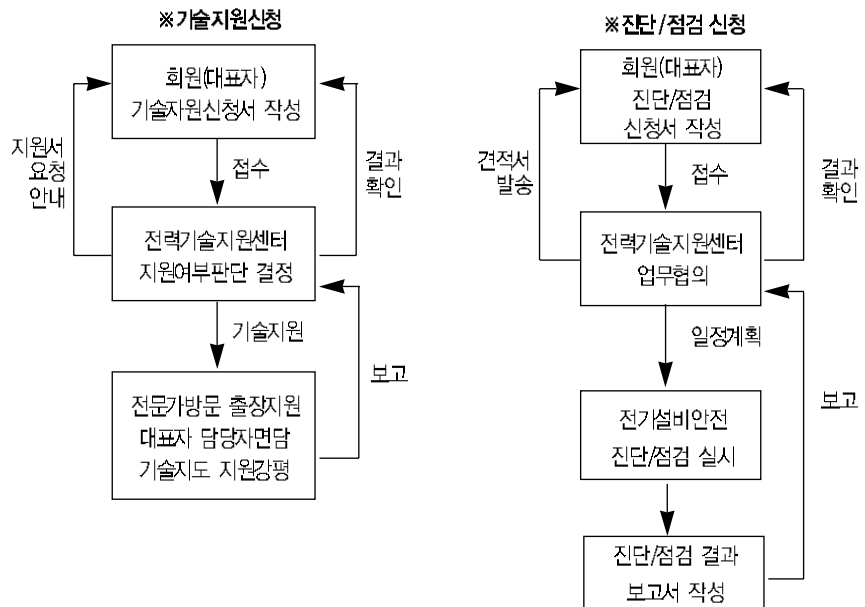
■ 전력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합니다.)

■ 진단 및 점검

- 전력계통진단,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점검, 열화상 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정전기 방지 기술진단, 기타 부적합 전력설비 부분진단

■ 신청 절차



전력산업계 전문가 DB자료 갱신·보강관련 등록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전력산업 기획조사사업 중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개발에 관련 연구용역」을 산업자원부와 협약하여 2006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력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기 등록된 전력산업계 전문가 Pool 자료의 갱신·보강과 등록되지 아니한 전력산업계의 전문가를 발굴·추가 등록하여 체계적인 Pool(DB)을 관리함으로써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개발의 평가위원 및 기술자문위원 등의 위촉 위원으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참여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협회에서도 기술자격 및 전문분야, 주요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술자문·교육강사·제도개선 분야의 위원 등으로 전기계 발전에 참여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조하시어 등록자료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자료 갱신·보강 요령

○ 인터넷상에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검색

www.etep.re.kr/ETEP/home/index.jsp

○ 홈페이지 우측 가운데 화면에서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스템” 창 클릭

○ 홈페이지 좌측 중간 화면에서

“ID 및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 홈페이지 좌측 중간의 로그인 화면 하단에서

“개인정보수정” 창 클릭

○ 기 입력된 개인정보 화면에서

변경된 인적정보(근무처, 연락처, 연구논문 등)를 수정

○ 개인정보 화면 최하단 중앙의 저장, 취소 선택 key에서

“저장” 창을 클릭하면 갱신·보강이 완료

리하여 직접 등록하고, 인터넷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뒷장의 등록자료조사표에 내용을 기재한 후 FAX[02]581-4257] 로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가.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최초 메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기관등록을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시 기관정보와 기관관리자 정보를 입력 후 등록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 기존 등록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 추가시 : 추가건수를 우측 Key(1행, 추가)를 이용, 추가버튼 클릭 후 자료 입력
- 삭제시 :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이용한 선택·삭제는 불가능하므로 삭제건수를 우측 Key(1행, 삭제)를 이용, 마지막 자료부터 1건씩 삭제

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 : 최초 메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사용자등록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기본사항,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하고 화면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관등록은 “가”항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라.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하단의 “전력산업계 전문가 D/B 자료 갱신 및 보강” 창을 클

전력산업계 전문가 POOL(DB) 구축 등록자료조사표

■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필수입니다.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입력선택	<input type="checkbox"/> 산업계 <input type="checkbox"/> 학계 <input type="checkbox"/> 연구계 <input type="checkbox"/> 협회·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해당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영문숫자포함 4~12자리미만, 아이디 중복시 별도연락 드립니다)			
	패스워드	(영문숫자포함 4~12자리미만)		패스워드 확인	
	성명	한글	영문	내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주민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경우)	-
E-mail					
소속직장 (현재직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대학 <input type="checkbox"/> 사립대학 <input type="checkbox"/> 국공립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직위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우편번호	(기관명 「소속직장」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자택	전화번호	()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F A X	()
	우편번호	(자택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거래은행	전화번호	()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H · P	()
	은행명			지점	
	계좌번호	(전문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신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사항 (최종학력부터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취득국가			학위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취득국가			학위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종학위 논문제목					

■ 자격사항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input type="checkbox"/> 기사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소지하신 최상의 자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

■ 경력사항 (최종경력부터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2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3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 평가위원경력사항 (정부 기반기금 등 연구용역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사업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명		기관명	
	사업평가일	년 월 일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임시위원 <input type="checkbox"/> 위원 <input type="checkbox"/> 평가위원
2	사업명		기관명	
	사업평가일	년 월 일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임시위원 <input type="checkbox"/> 위원 <input type="checkbox"/> 평가위원

▣ 지적재산권 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적재산권 명칭	구분(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국내 / 국외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자
1						
2						
3						

▣ 전문분야 (첨부된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전문분야 1~3순위까지의 대/중/소분류 코드를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 신에너지발전 : A/A1/A1010)

전문 1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 2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 3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주요연구 또는 논문발표 실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2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3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4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5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6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7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8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9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10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상기자료는 전문가 본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호	기술분야	코드번호	세부기술개발분야			
A	수·화력발전기술	A1	신원발전기술	A1010	신에너지발전		
				A1020	재생에너지발전		
				A1030	석탄의 신이용발전		
				A1040	연료전지/MHD발전		
				A1050	신연료발전		
				A1990	기타 신원발전기술		
		A2	발전설비구축기술	A2010	입지환경기술플랜트		
				A2020	플랜트 적용 평가기술		
				A2030	플랜트 설계/제작기술		
				A2040	플랜트 시공/관리기술		
				A2990	기타 발전설비 구축기술		
				A3010	설비지단		
A3	기존설비운용기술	A3020	연소관리				
		A3030	효율향상				
		A3040	전기설비개선				
		A3050	제어설비개선				
		A3060	기계설비개선				
		A3070	수·화학설비개선				
A3990	기타 기존설비 운용기술						
A9	기타	A9000	기타 수·화력발전기술				
B	원자력발전기술	B1	신원전이용기술	B1010	신형 중수로		
				B1020	신형 경수로		
				B1030	신형 중수로핵연료		
				B1040	신형 경수로핵연료		
				B1990	기타 신원전 이용기술		
				B2010	입지환경		
		B2	발전설비구축기술	B2020	플랜트 종합설계		
				B2030	원자로계통설계		
				B2040	노심 및 핵연료설계		
				B2050	기자재 설계/제작		
				B2060	설비시공/관리기술		
				B2990	기타 발전설비 구축기술		
		B3	기존원전운용기술	B3010	안전성 향상		
				B3020	운전성 향상		
				B3030	진단/검사/평가		
				B3040	정비		
				B3050	설비개선		
				B3060	방사선관리 및 폐기물처리		
B3070	원전수명관리 및 폐로						
B3080	원전정보관리						
B3990	기타 원자력 운용기술						
B9	기타	B9000	기타 원자력발전기술				
C	전기환경친화기술	C1	발전환경개선기술	C1010	지구환경		
				C1020	대기환경		
				C1030	수질환경		
				C1040	해양환경		
				C1050	감시 및 평가		
				C1060	폐기물처리		
		C1070	유해물처리				
		C1990	기타 발전환경기술				
		C2	전기환경개선기술	C2010	코로나 및 이온류 방해저감		
				C2020	전자계 대책 및 저감기술		
				C2030	전자계 안정성 평가기술		
				C2990	기타 전기환경친화기술		
C9000	기타 전기환경기술						
C9	기타			C9000	기타 전기환경기술		
D	전력계통수송기술	D1	발전환경개선기술	D1010	계통계획 및 연계기술		
				D1020	계통 안정화 제어		
				D1030	유연송전(FACTS)		
				D1040	광역보호회선 및 자동화 기술		
				D1050	전력시장 운용기술		
				D1060	모델링 및 해석 기술		
				D1070	경제적 전력수급 계획		
				D1990	기타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D2	송변전기술	D2010	가공송전
						D2020	지중송전
						D2040	직류송전기술
						D2050	송변전기기개발
		D2060	송변전기자재 소재개발				
		D2070	송변전설비 성능개선				
		D2080	고전압절연기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호	기술분야	코드번호	세부기술개발분야	
D	전력계통수송기술	D3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D2990	기타 송변전기술
				D3010	배전 신기술공법개발
				D3020	계통신뢰도향상
				D3030	설비 고장예지/수명예측
				D3040	신소재 배전자재 개발
				D3050	전기재해 예방/환경관리기술
				D3060	중합 배전자동화 및 보호협조
				D3070	배전부하예측 및 설비투자계획
				D3080	분산전원 및 배전계통 구성 기술
		D3090	배전계통 뇌해대책 및 접지기술		
		D3990	기타 배전 기술		
		D9	기타	D4990	기타 전력수송기술
E	전기이용기술	E1	전기품질향상기술	E1010	전기품질 진단기술
				E1020	전기품질 개선장치
				E1030	전기품질 관리 네트워크
				E1040	배전설비 표준시공 기술
				E1990	기타 전기품질 향상기술
				E2010	수요관리 평가기술
		E2	수요관리기술	E2020	축열·축냉시스템 운용기술
				E2030	고효율 축열·축냉기기 개발
				E2040	히트펌프 응용기술
				E2050	수용가 부하제어 및 관리기술
				E2990	기타 수요관리기술
				E3010	전자전력저장
		E3	전기저장/응용기술	E3020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저장
				E3030	기계식 에너지저장
				E3040	초전도 재료개발
				E3050	방전·고전압기술
				E3060	레이저기술
				E3070	초전도 자석응용기술
E3990	기타 전기저장/응용기술				
E4	수용가시스템기술	E4010	전기안전기술		
		E4020	요금제도관리기술		
		E4030	전력시장/거래시스템개발		
		E4990	기타 수용가 시스템기술		
		E5010	고효율 전동기개발		
		E5020	고효율전력변환장치개발		
E5	전기사용합리화기술	E5030	고효율 조명기기개발		
		E5040	고효율 중전기개발		
		E5990	기타 전기사용 합리화기술		
		E9000	기타 전기이용기술		
		F1010	금속/재료기술		
		F1020	전기/제어기술		
F1030	기계기술				
F1990	기타 발전설비 기초기술				
F2010	금속/재료기술				
F2020	전기/제어기술				
F2990	기타 송변전설비 기초기술				
F3010	금속/재료기술				
F3020	전기/기계기술				
F3990	기타 배전설비 기초기술				
F9	기타	F9000	기타 전력기초기술		
G	전력기술인프라	G1	전력기반조성	G1010	전력산업정책연구
				G1020	연구성과분석 및 평가기술
				G1030	국제협력기술
				G1040	연계기술표준화
				G1050	연구 및 시험설비구축
				G1990	기타 전력기반조성기술
		G2	전력정보기술	G2010	D/B 구축·관리
				G2020	시스템개발 및 운용
				G2030	고객서비스정보기술
				G2990	기타 전력기술 정보화기술
				G3010	기초인력양성
				G3020	산업인력양성
G3	인력양성	G3030	전문인력양성		
		G3040	장학지원		
		G3990	기타 인력양성		
		G9000	기타 전력기반기술		
		Z1000	기타 전력산업연구개발기술		
		Z	기타분야	Z1	기타 기술

06

인터넷 업무거래 및 각종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안내

■ 목적 및 시행일자

- 회원 및 설계·감리업체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007. 4. 2일부터

■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상

- 가. 회원 : 본인이 정상회원
- 나. 관련업체 : 당해 업등록 보유기술인력 전원이 협회 정상회원
- ※ 정상회원 : 회원관리규정에 의한 정상회원을 말함(권리정지자 및 제명자 제외)

■ 인터넷 서비스 이용범위

구분	서비스 이용범위	비고
회원	- 회비조회 및 납부 - 교육접수 및 교육수료증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전력기술인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필증	회원본인
관련업체	- 전력기술인(설계업)보유확인서 -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배치확인서 - 공사감리원료필증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대행사업체·대행기관/산자부·시도제출용)	설계업체 감리업체 대행업체 안전공사 대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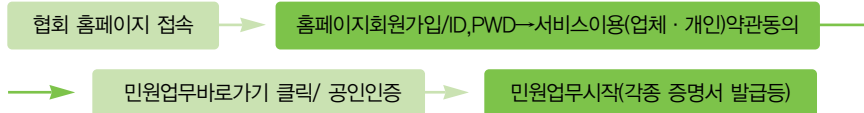
■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결제방법

- 가. 인터넷업무거래 : 교육접수시 교육비는 교육과정별 소정교육비 적용
- 나.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 증명서 종류별로 “회원할인수수료” 적용
- 다. 결제방법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서비스 이용신청방법

- 회원 또는 관련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신청



※ 자세한 이용절차는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민원업무바로가기 참조